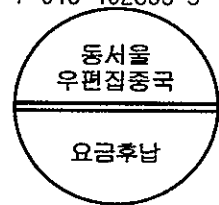


2012년 1월 1일부터 교통법칙금 및 과태료를 efine(<http://www.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작용QR-

보내는 사람
서울관악경찰서장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교통관리계(민원실)
 교통과 ☎: 182, 02)870-0606(경비606)
 fax: 02-870-0991
 0 8 8 3 3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관악소방서 귀하
 0 8 8 3 3

1명
최민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 : 관악소방서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2019.11.22. ~ 2019.12.27.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 30,000원 (벌점0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 32,000원 (사전납부로 20% 감경 ※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 40,000원

2.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 됩니다.(뒷면 참조)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위반차량	
		78모0311	
위반일시	2019년 11월 20일 10시 51분		
위반장소	봉천로 331-1 화목한교회 앞(현대시장입구R→당곡R)		
위반내용	속도(제한:60 주행:77 초과:17)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일련번호	M1037-2019-90003999		

서울관악경찰서장 (관인)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소 관	세입징수관	관서계좌
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	180991

과태료고지서번호	0137-1121-7-019-102868-5		
납 부 자	관악소방서	위반차량	78모0311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사전 납부	기한	2019년 12월 27일까지	
	금액	32,000원	
납부상계좌	신한은행 561-928-46600195 (운영시간 : 01:00 ~ 22:50) ※ 타은행 계좌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함니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관악경찰서장

은행(우체국)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수납인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 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 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수납 의뢰서(수납은행용)

소 관	관	항	목	세입징수관	관서계좌
경찰청	12	56	563	서울관악경찰서	180991

과태료고지서번호	0137-1121-7-019-102868-5				
납 부 자	관악소방서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사전 납부	기한	2019년 12월 27일까지			
	금액	32,000원			
회 계	일반회계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관악경찰서장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